



"기획은 공정하게! 희망은 다같이!"

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

보도자료

제공일 : 2011. 11. 11.
제공자 :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산업과
과 장 : 김 기 훈
사무관 : 이 범 섭
전 화 : 500-1996
쪽 수 : 2p
별첨자료 : 있음(1)

이 자료는 2011년 11월 14일 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트랙터 등 중고농기계 거래, 지금보다 더 활성화 된다

-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(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) -

〈 주 요 내 용 〉

◇ 중고농업기계 유통 활성화를 위해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를 설치·운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

□ 농림수산식품부는 중고농업기계 거래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「농업기계화촉진법」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2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
□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,

○ 중고농업기계 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고농업기계의 거래가격과 수급정보제공, 상설전시 및 매매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음(법 제8조의3 제1항 신설)

○ 또한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중고농업기계 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.(법 제8조의3 제2항 신설)

※ 중고농업기계 거래 현황

○ 연간 국내 거래현황 : ('07) 6,192대 → ('08) 7,438 → ('09) 9,630 → ('10) 10,507

○ 중고농업기계 수출실적 : ('07) 657만불 → ('08) 1,250 → ('09) 827 → ('10) 900

□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중고농업기계에 대한 정확한 거래정보제공으로 유통이 활성화되고, 자원의 재활용으로 인한 환경보호와 수출확대 측면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밝히면서,

○ 하위법령에서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여 중고농업기계 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.

<참고자료>

< 신구조문 대조표 >

현 행	개 정
<신 설>	제8조의3(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1. 중고 농업기계의 거래가격, 수요 및 공급 현황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. 중고 농업기계의 상설 전시 및 매매 3. 중고 농업기계의 유통 실태조사 4. 그 밖에 중고 농업기계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운영을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③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